# [검토보고서]

2019. 9. 3.(화) 제309회 임시회

##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





#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과

O 제안자 : 기업경제과장

O 제출일 : 2019년 8월 27일

## 2. 제안이유

O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(안 제1조)
- 나.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(안 제2조)
- 다.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및 조건(안 제3조)
- 라.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(안 제4조)
- 마. 상인회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(안 제5조~제6조)

## 4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나. 입법예고 : 2019. 7. 5. ~ 7. 15. (10일간)

다. 부서협의 결과
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- 성별영향분석 평가 : 개선사항없음

- 규제심사 등 : 원안가결

## 5. 검토의견

## 가. 조례 개요

- 본 조례안은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서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- 조례안은 총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음

## 〈조례의 구성〉

구분	내용	세부내용	
제1조	목적	조례 제정 목적	
제2조	전통시장의 인정 취소	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및 절차	
제3조	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및 조건	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, 갱신 횟수는 1회로 규정	
제4조	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	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규정	
제5조	상인회 등록 취소	상인회 등록 취소 및 절차	
제6조	시장관리장의 지정 취소	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및 절차	
제7조	시행규칙	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	
부칙		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	

## 나. 주요내용

## 1) 목적(안 제1조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)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(안 제2조)

제2조(전통시장의 인정 취소) ① 양주시장(이하 "시장(市長)"이라 한다)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(市長)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O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O 양주시 시장 현황

전통시장	상점가	공설시장
없음	1개소 (엄상마을 상점가)	3개소 (신산, 가납, 덕정시장)

※ 공설시장은 본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

### O 상점가 현황

- 상인회명: 엄상마을상가 상인회(대표: 손재현)

- 위 치: 양주시 고암길 26~58일원

- 등록일자: 2017. 6. 20.

- 규 모: 상점가 면적 2,557m², 점포수 43개소

#### O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록 요건

	주요내용	관련법령
	- 도·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	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
	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 점유 면적의 합계가 1천	위한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
	제곱미터 이상	제2항
	- 도·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	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
전 통	이상 밀집	위한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
시		제1항
장	- 용역 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	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
	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	위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나목
	※ 용역제공장소 : 음식점, 제과점, 미용원, 세탁소,	
	의원, 서점, 금융업소, 사무소,	
	학원, 체육시설 등	
상	- 2천 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	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2조제7호
점	이상의 도·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	- 시행령 제5조
가	있는 지구	

#### [관계법령]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전통시장"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·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,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.
  - 가.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
  - 나.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
  - 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- 2. "상점가"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.

- : "상점가"란 일정 범위의 가로(街路)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·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.
- 제10조의2(시장의 인정 취소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,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
  - 2.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  - 3.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
 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- 3)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및 조건(안 제3조)
- 제3조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및 조건) ①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 기간은 5년으로 하고, 갱신 횟수는 1회로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 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.
  -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7조의2에 따라 공유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 기간은 5년으로 하고, 갱신 횟수는 1회로 규정함

#### [관계법령]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- 제17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있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·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 1항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 -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.
  -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·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4)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(안 제4조)

제4조(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) 법 제 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, 생년월일, 주소,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 (市長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38조의2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, 생년월일, 주소,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양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

#### [관계법령]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- 제38조의2(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) ① 토지 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·군수· 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.
  -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## 5) 상인회 등록 취소(안 제5조)

- 제5조(상인회 등록 취소) ① 시장(市長)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(市長)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#### O 상인회 등록 요건

	주요내용	관련법령
상 인 희	<ul> <li>전체상인의 1/2 이상 등록 동의</li> <li>구비서류: 동의인 명부, 총회 회의록, 규약 또는 정관, 사업계획서, 재산명세서</li> <li>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 사항</li> <li>: 명칭, 업무구역, 목적, 사업내용, 총회와 이사회, 임원선출방법,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</li> <li>상인회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</li> <li>전통시장, 상점가 상인회 등록기준 동일</li> </ul>	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, - 시행규칙 제12조

#### [관계법령]

##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#### 제65조(상인회)

- ① ~ ⑦ 생략
- ⑧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8.>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
- 2.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
- 3.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
- 4.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, 건축물·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- ⑨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①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## 6)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(안 제6조)

- 제6조(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) ① 시장(市長)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(市長)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#### [관계법령]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- 제68조(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  - 2. 상인 및 건축물 ·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  - 3.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
  - 4.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 -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## 7) 시행규칙(안 제7조)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서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, 상인회 등록 취소,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 조례로
- 양주시를 비롯하여 전국 대부분의 전통적인 지역상권은 상품유통 구조 변화와 소비자 구매형태 변화에 따라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 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되 고 있는 상황임
- 현재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은 덕정동 엄상마을 일원 상점가 1개소 (43개 점포)가 있으나, 향후에는 옥정지구 등 상권 변화에 따라 상점가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으며, 신산시장 복합센터 준공 후 층별 상가 구성 특성에 따라 전통시장 지정 검토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조례 제정과 더불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